



토지소재	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
지 번	243번지
측량종목	(특수)지적현황

# 지적현황측량 성과도

토지 소재	구로구 고척동 243번지 외 2 필	축척	1 — 1200
측량자	2021년 7월 9일	측량성과도	2021년 7월 9일
	지적산업기사 김용민 (인)	작성자	지적기사 민수정 (인)

현황 표시

범례	명칭
—	도시계획선
—	아래빈칸

면적 표시

지번 부호	면적(㎡)
243ㄱ	160
ㄴ	6206
ㄷ	6683
243	13049
아래빈칸	



(특수)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

2021년 7월 9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남부지사장 인

비고	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

전경 현황(사진)



① 경계점표지 위치(사진)



② 경계점표지 위치(사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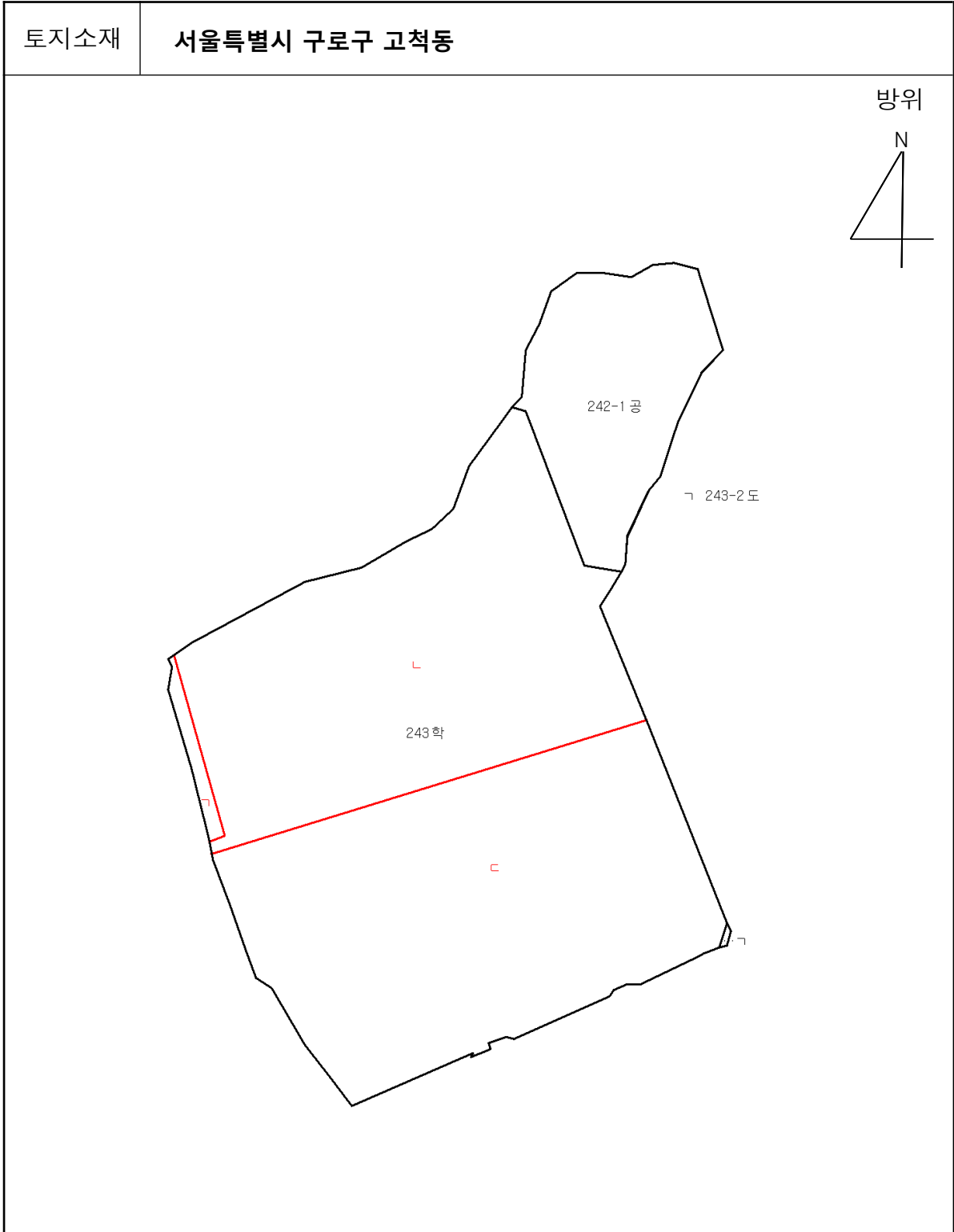
③ 경계점표지 위치(사진)



④ 경계점표지 위치(사진)



# 참 고 도



**[유의사항]** : 이 도면은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## 토지 공시현황

토지소재			지 번	지 목	면 적(m <sup>2</sup> )										
시·군·구	읍·면	동·리													
구로구		고척동	243	학교용지	13049										
<p>개별공시지가(원/m<sup>2</sup>) 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1,897,000 (기준일: ○○년 ○월 ○일)</span></p> <p>개별주택지가(원) 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기준일: ○○년 ○월 ○일)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『토지이용계획 현황』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지역·지구 등 지정여부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 등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근린공원(저축), 도로(저축), 소로2류(폭 8M~10M)(저축), 학교(저축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[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-공항시설법], [장애물제한표면구역(진입표면)-공항시설법], [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해발165m(지반+건축+옥탑 등),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대통령령 제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 기재 확인 내용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padding: 5px;">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					지역·지구 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 등	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근린공원(저축), 도로(저축), 소로2류(폭 8M~10M)(저축), 학교(저축)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	[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-공항시설법], [장애물제한표면구역(진입표면)-공항시설법], [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해발165m(지반+건축+옥탑 등),	대통령령 제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 기재 확인 내용		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		
지역·지구 등 지정여부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 등	도시지역,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근린공원(저축), 도로(저축), 소로2류(폭 8M~10M)(저축), 학교(저축)													
	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	[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-공항시설법], [장애물제한표면구역(진입표면)-공항시설법], [대공방어협조구역(위탁고도:해발165m(지반+건축+옥탑 등),													
	대통령령 제9503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추가 기재 확인 내용														
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															

**[유의사항]** 여기에 적힌 사항은 참고사항이며, 자세한 사항은 시·군·구에 방문하여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의 공적증명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